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. 5. 31 선고 2017가단4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망 B의 유언집행자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5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. 1. 23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고종완

별지